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2934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2. 7. 31.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경 D에 대한 주식회사 E의 신용카드대금 채권과 2014. 11. 27.경 주식회사 F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각 양수하였고, 2022. 11. 2.기준 위 각 양수금 원리금 합계는 311,107,421원이다. 원고는 D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50672호로 위 카드대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42810호로 위 대출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판결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과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으나, D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D의 부친인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22. 7. 31. 사망하였는데, 공동상속인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망인의 자녀인 H, C, I, D이 있다.

다. 망인은 1999. 8. 14.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의 사후 H, C, I, D은 2022. 7. 31.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5. 접수 제193322호로 2022. 7.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각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상속분인 11분의 2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혼인생활 중 경제적 활동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이거나, 상속인 중 C의 재산 또는 경제적 도움으로 생성된 피고의 거주지인바, 그 지분의 대부분을 피고가 보유하는 것이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과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매경위, 구매자금의 출처, 대출 여부, 각 상속인들의 기여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판단할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피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위와 같이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D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홍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아파트 []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평층대브지붕 19층 아파트

1층 내지 3층 각 651.78㎡, 4층 내지 16층 각 642.54㎡, 17층 내지 19층 각 557.5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대 10779.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84.9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0779.7분의 28.987 끝.

